

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3. 12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행복나눔과)
- 제출일자: 2024. 2. 28.(수)
- 회부일자: 2024. 2. 28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4. 3. 12.)

2. 제안이유

-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7월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
-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」 제9조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 (면적, m ²)	현 위탁사항		비고 (개관일)
			위탁기간	법인명	
상인종합사회 복지관	상화로 371 (상인동)	지하1, 지상3층 (연면적 2,896.5m ²)	2019.7.23.~ 2024.7.22.	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	1994.7.26.

나. 위탁개요

- 위탁내용
 -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
 - 사회복지관 사업(사례관리, 서비스제공, 지역조직화)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」 등에 근거한 사무
 - 기타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추진 등
- 위탁기간: 5년(2024. 7. 23.~2029. 7. 22.)
-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·선정

4. 관련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·운영 조례」 제9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부터 제10조까지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동의안은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(2019년 7월 23일부터 2024년 7월 22일까지)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1994년 7월 개관한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은 상인비둘기 1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, 지하1층, 지상3층에 연면적 2,896.59㎡로 시설 내 남녀목욕탕, 경로급식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,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.
-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은 1일 평균 약 800명, 2023년 연간 19만 2,014명이 이용하였으며, 사례관리·서비스제공·지역조직화 기능 및 특화사업 등을 통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, 현재 총무팀, 서비스제공팀, 지역조직팀, 사례관리팀 등 4개 팀에 사회복지사 7명을 포함해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음.
- 재위탁동의안은 위탁업체 선정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으로 하고,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, 같은 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법령에 따른 위탁절차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로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전문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.
- 따라서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고,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